입법동향 – 2025년 제5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7
2.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10
3.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13
4.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15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23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27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 ····· 37
2.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입법례 ····· 45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57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65
2.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수당 지급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68

Ⅵ. 법령 해석 사례

1. 사용개시 공고 완료된 도로에 공작물 설치 시 도로법에 따른 허가 여부 ··· 73
2. 교육감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81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시행 2025. 5. 15., 경상남도조례 제5841호, 2025. 5. 15.,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농업 현장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과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2곳(경남, 경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영농부산물은**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며 **볏짚, 콩대, 깻대, 전정가지 등** 종류가 다양하고 영농폐비닐과 영농폐농약 등의 **영농폐기물과 구분**됨. ※ 우리나라 영농부산물 발생량: 연간 934만톤 수준

○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 후 처리**하지만 **영농부산물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임.

○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은 산불의 원인이 되며,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바,

○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파쇄) 후 퇴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시행 2025. 5. 15., 경상남도조례 제5841호, 2025. 5.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산불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 활용
5.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도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3., 전라남도조례 제6242호, 2025. 4. 3.,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짐에 따라 피해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나, **재해 피해**로 인한 농산물은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긴급대책 마련**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사업, 재해대책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3곳(전남, 경북, 부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양상의 다양화로 농업 분야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역시 자연재해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현재, 우리 도는 **호우 피해의 경우 시·군 면적이 50ha이상, 대설·우박 피해의 경우 30ha 이상**일 경우 피해 농가에 지원(2024년 도비 55억 지원) 하고 있고,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재해 피해 보상은 일정 면적 이상**일 때만 가능하고, **보험 가입 품목은 한정(9개) 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소규모 피해 농가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3., 전라남도조례 제6242호, 2025. 4.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3.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원 사업
3. 필요한 재원(財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피해농가로 한다.

1.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둘 것
2. 도 관할 농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2. 농작물 폐기
3.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금
4.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해대책반**)

① 도지사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
3. 지원 대상 농작물 선정
4. 지원 방법 및 추진 일정 협의

② 재해대책반은 재해대책반의 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시·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재해대책반의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재해대책반의 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재해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2., 충청남도조례 제5881호, 2025. 5. 12.,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 발생률을 50% 이상 감소**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있으나, **1회 접종 시 고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함(제2조).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함(제4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11곳(충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제주)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 대상포진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상포진 진료 환자 수는 **매년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 **우리 도 대상포진 환자수**는 2023년 26,577명으로 2022년 25,356명 대비 **1,221명(5%) 증가**하였으나, 지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충남: 예방접종자 3,685명분, 도비 15억 원 편성(도비 30%, 시·군비 70% 대응투자)

○ 국내 판매되는 대상포진 백신은 총 3가지* 종류이고 15만원에서 50만원의 접종 비용이 소요되는 바,

* 스카이조스터(1회 접종, 15만원), 조스터박스(1회 접종, 17만원), 싱그릭스(2회 접종, 50만원)

○ 도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高) 비용의 **백신접종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2., 충청남도조례 제5881호, 2025. 5. 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5. 그 외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횟수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정]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3., 울산광역시조례 제3097호, 2025. 5. 13., 제정】

□ 상임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 및 산림 주변 개발확산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인접지역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제6조).
다.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3곳(울산, 대구, 경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우리 도 **면적은 8,073㎢로** 이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은 4,440㎢로 전체 면적의 55.0%에 해당함.**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피해**(인명, 재산, 면적 등)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고창, 순창, 무주 산불발생 피해면적: 29.3ha, 2024년 한해 발생한 피해면적 9.18ha보다 20.12ha(219%) 늘어남.(전북도민일보 2025. 3. 27.)

○ 산림은 **일정한 경계 없이 이어져 있고 타 시·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인접지역 소화기구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3., 울산광역시조례 제3097호, 2025. 5.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관내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주변지역” 이란** 제2호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한 건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 등을 포함한다.
4.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
6.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재난방지법」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林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방지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3. 산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4.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시장은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4호, 2025. 4.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❶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❷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지역 발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해당 조례는 필수조례**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특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로 법령에 따라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임.

○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기한 연장과,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등에 대한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를 명시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의 면적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24. 11. 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632호, 2024. 11.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생략)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 ~ 제16조 (생략)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7조 ~ 제27조 (생략)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9조 ~ 제33조 (생략)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34조 ~ 제35조 (생략)

제5장 감독 등

제36조 ~ 제37조 (생략)

제6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38조 ~제51조 (생략)

제7장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52조 ~ 제55조 (생략)

제8장 보칙

제56조 ~ 제57조 (생략)

2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6호, 2025. 4. 1., 일부개정】

□ 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제 정
<신 설>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⑧ (생략)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 전북자치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역시 10개 시·군**이 해당됨.

* 1,735,008명(2025. 1.) → 1,732,439명(2025. 4.) ※ 4개월간: 2,569명 감소

**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 우리 도는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매년 **자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활력 강화 및 지방소멸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5대 전략	결혼 출산지원	촘촘한 돌봄 확대	특성화 교육 제공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삶의 질 및 지역활력 제고
10대 실천과제	결혼부담완화	미래세대 돌봄 지원확대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	청년 희망 일자리 확충	정주·생활환경 제고 ***
	임신·출산지원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 특화 교육 제공	중장년 사회일자리 확충	생활인구 유입 제고 ****

*** 정주여건 생활환경 제고 사업: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등 추진

**** 생활인구 유입 제고 사업: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 등 추진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보다 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기회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인구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의 정책·사업 및 행정·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하며,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5.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효과적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주관부서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 시·군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군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2. 인구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 조사·수집·분석 등
3. 그 밖에 관련 정책·사업 및 행정·제도에 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와 활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지방소멸 정책・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북자치도 소속 실・국장급 중에서 인구정책, 국가예산 관련 공무원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전북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문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결과를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보건·의료·안전·교통·주거·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우수사례 발굴·확산)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및 관계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우수사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운영·관리)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련한 정책·사업 및 행정·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운영·관리 위하여 총괄·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총괄·지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7호(통권 제270호), 심소연】

◇ **유럽연합(EU)은**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사고의 탐지, 대비 및 대응을 위한 EU 회원국 간 연대와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을 제정하고,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을 개정**했다.

◇ **「사이버연대법」**은 대규모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비상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EU 사이버보안청(ENISA) 주도로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를 분석해 공유함으로써 **대응 역량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한편, 개정된 **「사이버보안법」**은 관리형 보안 서비스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망 보안 및 디지털 기술 주권 확보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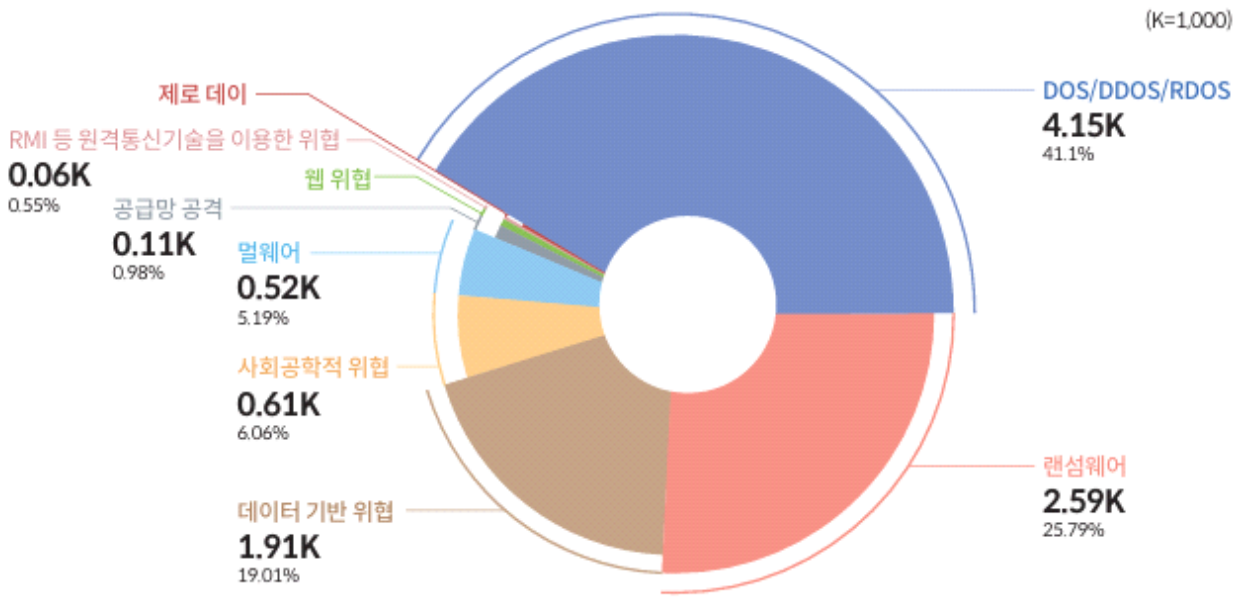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규율하며,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을 통해 국내 차원의 사이버보안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민관 협력 확대 및 국제적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EU의 입법례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사이버안보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주제어	유럽연합, 사이버연대, 사이버보안, 유럽 사이버 방패, EU사이버보안청

□ 도입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군사적 공격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EU(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 회원국들)와 NATO 회원국의 주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그림1>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활용하여 EU 회원국의 정부 웹사이트, 에너지 및 교통 시스템을 공격하고 교란했다**. 이는 EU 사이버 방어 체계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EU의 입법 노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EU에서 발생한 사이버 위협 유형 별 사고 건수**



출처: 2024 Report on the state of cybersecurity in the Union

❍ 이에 **EU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법률을 강화**하고, EU 사이버보안청(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ENISA)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 위원회는** 2023년 4월 **「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의 제정과 「사이버보안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동 서명으로 제정되었다.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된 「사이버 연대법」과 「사이버보안법 개정 규정」은 EU 관보에 게재된 2025년 1월 15일로부터 20일 후인 2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 「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

「사이버연대법」의 목적과 목표

❍ 「사이버연대법」은 사이버 위협 및 사고를 탐지,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EU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EU 내 산업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EU의 디지털 기술 주권과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제1조).

-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사이버 사건이나 대규모 위협에 대한 인식과 탐지 능력 강화, 중요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강화, 중대한 또는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한 EU의 복원력 강화가 있다.

유럽 사이버보안 경보 시스템(European Cybersecurity Alert System)

❍ 이 시스템은 EU 회원국 및 국경 간 '보안 운영 센터(SOC)'를 연결하여 유럽 사이버 방패(European Cyber Shield)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위협 탐지와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각 보안 운영 센터(SOC)는 '국경 간 사이버 허브(Cross-Border Cyber Hubs)'로 통합되며, 이는 최소 3개 이상의 국가 사이버 허브를 포함한다. 보안 운영 센터(SOC)는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고급 위협 탐지 및 상황 인식을 제공하고, 회원국과 EU 기관의 사이버보안 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제3조).

❍ 국경 간 사이버 허브는 「NIS2 지침」에 따른 EU 회원국 간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CSIRTs Network)와 정보 공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공유할 정보의 유형과 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시, EU-CyCLONe,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와 조기 경보를 제공한다(제6조~7조).

❍ 유럽 사이버보안 경보 시스템에 관한 자금 지원 형태는 <표 1>과 같다(제9조).

표 1 유럽 사이버보안 경보 시스템 자금 지원

구분	내용
유럽 사이버보안 역량센터(ECCC[8])의 공동 조달 참여 회원국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ECCC는 회원국의 국가 사이버 허브 설립·강화를 위해 도구·인프라 또는 서비스의 공동 조달에 참여할 회원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회원국에 해당 도구·인프라 또는 서비스의 취득 비용의 최대 50% 및 운영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선정된 회원국이 부담. • 공동 조달 절차 개시 전에 ECCC와 선정된 회원국은 해당 도구·인프라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규율하는 호스팅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추가 지원 제한	• 회원국의 국가 사이버 허브는 도구·인프라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날 중 빠른 날부터 2년 이내에 국경 간 사이버 허브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ECCC의 호스팅 컨소시엄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ECCC는 '호스팅 컨소시엄(hosting consortium)[9]'을 선정하여 도구·인프라 또는 서비스의 공동 조달에 참여하게 함. 호스팅 컨소시엄에 해당 도구·인프라 또는 서비스의 취득 비용의 최대 75%, 운영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호스팅 컨소시엄이 부담. • 공동 조달 절차 개시 전에 ECCC와 호스팅 컨소시엄은 해당 도구·인프라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규율하는 호스팅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2년 주기 국가·국경 간 사이버 허브 역량·자원 현황 정리	• ECCC는 최소 2년마다 국가 및 국경 간 사이버 허브의 역량과 가용 자원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작성 시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팀(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 CSIRT) 네트워크, 국경 간 사이버 허브 및 EU집행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사이버보안 비상대응 메커니즘(Cybersecurity Emergency Mechanism)

❍ **사이버보안 비상대응 메커니즘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회복력 강화 및 중대한 또는 대규모의 사이버보안 사고의 단기적 영향을 연대 정신으로 대비하고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체계이다(제10조).

- 회원국에 대한 지원은 요청 시 제공되며,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지원된다.
- 유럽 사이버보안 역량센터(ECCC)는 사이버보안 비상대응 메커니즘 하의 조치를 회원국의 조치를 보완하는 형태로 수행한다.
- 유럽 사이버보안 역량센터(ECCC)는 EU의 사이버보안 기술, 산업,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회원국의 국가 조정 센터 네트워크(Network of National Coordination Centres)와 협력하여 운영된다.

❍ **사이버보안 비상대응 메커니즘이 지원하는 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제11조).

- EU 전역의 '높은 중요성을 갖는 분야(sectors of high criticality)'에서 활동하는 기관의 조정된 준비 태세 점검
- 높은 중요성을 갖는 분야 또는 '기타 중요 분야(other critical sectors)'에서 활동하는 기관을 위한 기타 준비 태세 조치
- 회원국 간 기술적 상호 지원 조치

EU 사이버보안 예비자원(EU Cybersecurity Reserve)

❍ **EU 사이버보안 예비 자원은 중대한 또는 대규모의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며, **위탁된 관리형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되는 대응 서비스**로 구성된다(제12조).

- EU 사이버보안 예비 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회원국의 사이버 위기 관리 당국과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팀(CSIRT), CERT-EU13),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EP)에 연계된 제3국의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팀(CSIRT) 및 사이버 위기관리 당국이다.
- EU 집행위원회가 EU 사이버보안 예비 자원의 이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EU 사이버 보안 예비 자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에 전적으로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사이버보안 사건 검토 매커니즘(European Cybersecurity Incident Review Mechanism)

❍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이 주도**하여 **대규모 사이버 사고를 평가하고 교훈을 도출하며, 회원국과 EU 기관에 권고안을 제공**한다. 이 메커니즘은 사고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건에 대비한 개선책을 제시한다(제21조).

-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은 **사이버보안 사고 검토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보고서는 민감 정보와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EU법 및 회원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 사고의 영향을 받은 회원국 또는 기타 사용자의 요청 시, 보고서의 데이터는 익명 처리되며, 해결책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취약점의 세부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의 목적과 범위 및 주요 개정 사항

❍「사이버보안법」은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과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 그리고 **EU 내 신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의 업무 및 조직, ICT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보장, 통합된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 **EU는**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법 개정 규정」을 통해 기존의 「사이버 보안법」 상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에 있어서 ICT 제품/서비스/프로세스에 대한 인증 체계에 **'관리형 보안 서비스(Managed Security Services, MSS)' 인증 체계를 추가로 도입**하여, EU 차원의 **통합된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를 보완**했다(「사이버보안법」에 제51조a항 신설).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체계(European Cybersecurity Certification Schme)의 확장 및 통합

❍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 인증의 주요 목표**는 **MSS 제공업체의 기술적 역량과 데이터 보호 능력을 평가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MSS 인증은 <u>기본(basic), 상당한(substantial), 고급(high)의 세 가지 수준</u>으로 나뉘며, 각 수준은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진다(「사이버보안법」 제52조).

- 이때 MSS 제공업체는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해야 하며, 물리적 또는 기술적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는 ICT 제품/서비스/프로세스 또는 MSS의 제조업체 또는 제공업체의 단독 책임하에 적합성 자체 평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적합성 자체 평가는 인증수준 "기본"에 해당하는 낮은 위험을

나타내는 ICT 제품/서비스/프로세스 또는 MSS와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된다(「사이버보안법」 제53조제1항)

❍ **회원국은** 이미 시행 중인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의 적용을 받는 ICT 제품/서비스/프로세스 및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에 대해 **새로운 국가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증 체계의 중복을 방지하고, EU 차원에서 통합된 인증 체계를 통해 내부 시장의 단일화를 촉진**한다(「사이버보안법」 제57조제2항).

지속적인 준수 모니터링

❍ **국가 사이버보안 인증 당국은**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에 포함된 **규칙을 감독**하며, 다른 시장의 감시 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급된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서의 인증 요건에 대해 **ICT 제품/서비스/프로세스** 및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적합성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ICT 제품 제조업체, ICT 서비스 또는 MSS 제공업체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한다(「사이버보안법」 제58조제7항).

- 적합성 평가 기관은 평가 대상과 다른 독립적인 제3자여야 하며, 비즈니스 협회 소속이라도 독립성과 이해 상충 없음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다.
- 적합성 평가 기관과 관계자는 평가 대상의 설계・제조・공급・유지보수에 관여하거나 대변할 수 없다.
- 적합성 평가 기관은 판단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해칠 수 있는 활동(예: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컨설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요약 및 결론

❍ **「사이버연대법」의 제정**으로 **EU는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며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집단적 회복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이버보안법」의 개정**으로 **EU는 통합된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국별 중복 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ICT 관련 기업들의 EU 회원국별 인증 부담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으로 국내 차원의 사이버보안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보안 인증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16)'을 획득**하면 「정보 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EU의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 인증**은 **사이버보안 역량과 서비스의 품질에만 초점**을 맞추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하여는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별도의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2022년 11월 28일에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약'**을 활용하여 **양측의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의 상호 인정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해 EU와의 사이버 보안 위기 공동 대응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천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 해외 사이버보안 입법동향 (2024), https://www.kisa.or.kr/20201/form?postSeq=231&page=1
- 국회도서관, 『사이버안보』, 팩트북 제108호, 2023.12.8.
- European Commiss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2025),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yber-solidarity

2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8호, 통권 제271호, 박진애】

◇ 우리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사회 전체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Anpassung)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도 **미리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 **독일 연방의회**는 2023년 12월 20일 **「연방기후적응법」**(KAnG)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2024년 7월 1일 발효되었는데, 기후 영향과 극심한 기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의 활동을 통합하고 연방정부, 주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조치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안에 기후위기 적응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법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최근 별도의 **"기후적응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다. 이에 독일의 입법례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주제어	기후위기, 기후변화 적응계획, 기후 위험 분석, 기후변화 감시, 자연 기반 해법

□ 도입

❍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2025년 3월 17일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법의 입법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적 강제력과 재정·경제적 이행체계를 갖춘 "기후적응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앞서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국회에서의 입법개선 시한**은 **2026년 2월 28일**이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내용 중 기후적응과 관련된 부분으로, 탄소배출량 목표치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재판관 4인이 합헌, 5인이 위헌결정을 위하여 위헌결정을 위한 6인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되었으나, 이 또한 입법개선이 요청되는 사안이다.

❍ 한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개정되어 2025년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동법은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개정**에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의무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독일은** 2019년 12월 제정한 「연방기후보호법」(KSG) 외에 **2023년 12월 「연방기후 적응법」(KAnG)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 최초로 기후적응을 위한 독립된 개별법을 두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 기후 관련 입법에서 '적응'이라는 개념은 기후변화에 단순히 순응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은 기후위기에 대한 핵심적 대응축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동 협약 제4조제1항(b)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facilitate adequate adaptation)이라고 명시되었다. 이후 2013년 유럽연합은 'EU 기후적응전략 패키지'를 채택하였고, 현재는 '2021년 EU 기후적응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과 「연방기후적응법」 비교

❍ 독일에서 **'기후보호'(Klimaschutz)와 '기후적응'(Klimaanpassung)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전략**으로, **「연방기후보호법」은** 독일의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감축 로드맵 역할을 하며, **「연방기후적응법」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 「연방기후보호법」이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연방기후적응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과는 정책 목표와 법적 성격이 다른 **「연방기후적응법」을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정책 영역의 명확한 구분 ▲법제적 안정성 확보 ▲정치적 추진 동력 분리 ▲EU 규범과의 일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강화 등 다면적인 실익을 확보하고 있다. 두 개의 법률은 [표 1]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표 1 독일「연방기후보호법」(KSG)과「연방기후적응법」(KAnG) 비교

구분	연방기후보호법 (KSG)	연방기후적응법 (KAnG)
제정 연도	2019년 12월 12일 제정 (2021년·2023년 개정)	2023년 12월 20일 제정 (2024년 7월 1일 발효)
주요 목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의 피해 최소화
법적 성격	감축 목표의 설정 및 이행 책임 명시	리스크 분석, 계획 수립, 적응 조치 체계화
주요 수단	배출허용량, 부문별 감축 할당	국가 적응전략, 적응계획, 정보 공유 의무 등
정책 영역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에의 대응방식	원인 제거(감축 중심)	결과 대응(적응 중심)
핵심 조치	• 부문별 배출량 상한 설정 • 연방부처별 책임 할당 • 독립 기후전문위원회 설치 • 목표 미달 시 시정조치 의무	• 연방정부 적응전략 법정화 • 주정부 적응계획 수립 의무 • 기후위험 분석 법제화 • 적응정보 제공 및 데이터 체계
중점 사안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등 배출 주체 중심의 조치	건강, 농업, 물 관리, 도시계획, 생물다양성,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주(州)정부의 역할	주정부의 감축 참여는 자율에 가까움	주정부의 적응계획 수립은 의무사항
감독·보고 체계	독립 기후전문위원회가 매년 감축 이행 점검	연방정부가 4년마다 국가 기후위험분석 보고서 제출
대표적 원칙	비용 효율성과 세대 간 형평성	자연 기반 해법[13] 강조
정책에 대한 저항	탄소 감축의무 부과, 경제적 부담 초래 등으로 정치적 저항이 큼	재난 회피, 회복력 증대라는 사회적 합의 기반이 강해 비교적 원활한 정책 추진이 가능
소관 부처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연방자연보호핵안전소비자보호부(BMUV)
계획 이행 책임 주체	연방 부처별(교통, 에너지 등)	연방 + 각 주정부
전문성 평가 체계	독립적 기후전문위원회 존재	별도 독립기구는 없음(보고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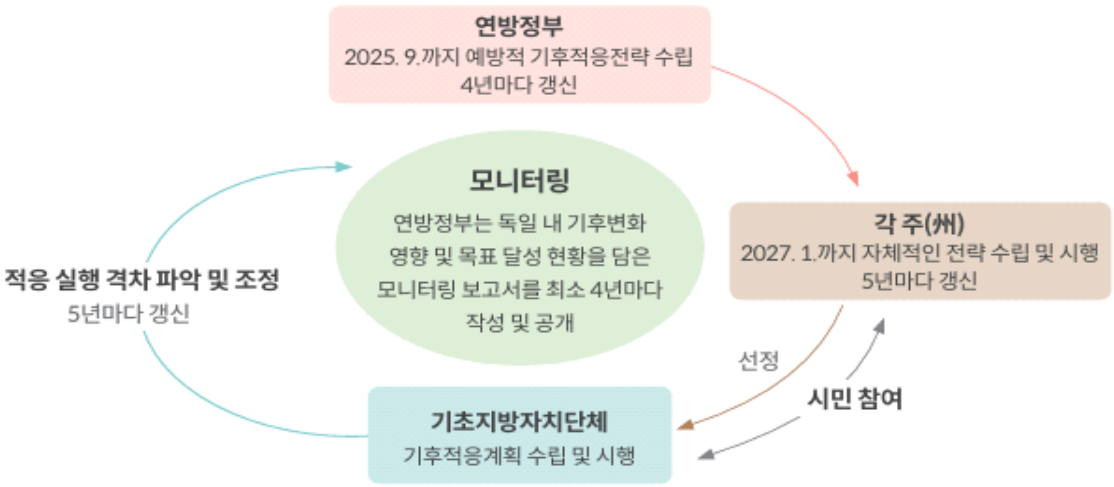
□ 독일의 「연방기후적응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1. 입법목적 및 중점 분야

❍ 「연방기후적응법」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특히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것과 아울러, **생태계와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동등한 생활 여건을 유지**하고, **국가 및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제1조).

❍ 입법목적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생명, 건강, 자산, 자연, 생태계를 기후변화(예: 극심한 기온,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방지
-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예방
- 불가피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 국제적 노력에 대한 기여



출처: https://wurstend.net/magazin/gesellschaft/das-bundes-klimaanpassung-sgesetz/

2. 주요내용

1)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 연방정부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예방적 기후적응전략을 수립**하고, **4년마다 최신 과학적 지식을 반영하여 갱신**해야 한다(제3조).

- 이 전략은 기후위험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인프라, 토지 및 토지 이용, 건강 및 간호, 도시 개발, 공간 계획 및 시민 보호, 물, 경제, 그리고 취약계층 또는 산업 안전과 같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 기후위험분석 및 데이터 수집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에 따라 기후위험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최소 8년마다 갱신**해야 한다(제4조).

- 기후위험분석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으로 활용되며, 특히 연방정부의 중장기적 조치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연방정부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전문적 근거 및 방법론적 지침을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 연방정부는 독일 내 **기후변화 영향 및 목표 달성 현황을 담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최소 4년마다 작성 및 공개**해야 한다(제5조)

- 모니터링 결과 목표 미달 시 기후변화 적응전략 갱신 시에는 관련 조치를 조정해야 하며, 목표 자체를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목표 미달이 예상될 경우, 전략 갱신 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 **각 주는** 자체적으로 **예방적 기후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관련 분야 계획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 대응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각 주의 전략은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제10조).

- 각 주는 전략 실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최소 5년마다 최신 과학적 지식을 반영하여 전략을 갱신해야 하며, 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각 주는 기존 전략이 없는 경우 2027년 1월 31일까지 연방 기후변화 적응 담당 부처에 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 **각 주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각 주는 2024년 9월 30일부터 **2년마다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한 시·군과 수립하지 않은 시·군을 연방 기후변화 적응 담당 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2024년 9월 30일까지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되는 **지역 및 지방 기후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 **각 주는** 지역별로 **기후적응계획을 수립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작은 시의 경우 군 차원의 계획으로 대체될 수 있다(제12조).

- 기후적응계획의 목표는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 과정 및 활동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행 목록에는 극심한 더위, 가뭄 및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시민의 자체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주 협력 체계 구축: 거버넌스 및 조정

❍ 연방정부와 **각 주는 사전 예방적 기후적응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제9조).

- **연방정부는** 관련 예산법에 따라 총괄적인 전략 개발과 모든 활동 분야 및 행위자의 조정, 데이터 제공, 기초 과학 작업 및 연구 프로젝트, 정보 제공, 행위자의 조언 및 네트워킹을 통해 **각 주의 기후적응을 지원**해야 한다.
- **각 주는** 연방법률과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적응을 목적으로 **자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기후적응을 위한 각 주의 기존 법률은 연방법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다.

□ 우리나라 입법례와의 비교 및 독일 「연방기후적응법」의 시사점

1. 우리나라와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입법례 비교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아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하며,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제37조~제46조)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함께 제시**하는 **포괄적인 기본법**이다. 반면, **독일의 「연방기후적응법」은** 이미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조문 구성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과 독일 「연방기후적응법」(KAnG) 조문 구성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	독일 「연방기후적응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1조 법의 목적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제2조 정의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3조 사전 예방적 기후적응전략
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조 기후위험분석, 정보수집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5조 감시, 목표 미달성 시 재조정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6조 연방차원에서의 기후적응계획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7조 연방자산(국유지)에서의 기후적응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8조 고려요건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제9조 연방과 주의 협력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10조 각 주의 기후적응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11조 각 주의 보고
	제12조 기후적응계획
	제13조 종결규정
	제14조 효력의 개시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높이고,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독일의 「연방기후적응법」은** 기후변화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영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2. 독일 「연방기후적응법」의 시사점

❍ 독일 「연방기후적응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1) 독립적인 법률 제정: 기후변화 적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단일 법률인 「연방기후적응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연방기후보호법」과 정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

2) 국가 책무의 명확화: 기후변화 적응을 **국가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연방정부에** '예방적 기후적응전략' 수립 및 **정기적인 데이터 갱신 의무를 부과**한다. 연방과 주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방기관 및 각 주,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각 주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자율성 부여와 체계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의 선순환 구조: 각 주의 기후적응전략과 계획 수립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조정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적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통합 및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다.

4) 자연 기반 해법의 강조: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연기반 해법을 명시하여, **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접근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5) 시민 참여 및 투명한 거버넌스: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측정 기준 설정, 조치 선택 과정에 **시민사회 단체 및 주정부의 참여를 보장**한다. 연방정부는 **기후변화 영향 및 목표 달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추천 자료

- 길준규,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과 독일의 국가전략과 법",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69집, 2015. 5.
- 현대호,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4-03, 2024. 7. 3.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셋째주	행정안전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전남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확대 방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AX 시대, AI 융합인재 양성 현황의 진단과 제언 ○GovTech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SW 융합 혁신의 개념과 실제 : 금융 및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하이퍼오토메이션 : 미래의 업무 혁신을 이끄는 열쇠 ○美 AI 액션플랜 수립 동향 : AI 산업계 정책 제언 중심으로 ○AI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조직 내 AI 접근성 확대 전략 ○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연구행정기관의 디지털 감사 도입 방안 연구 ○美 주요 과학기술정책 지형 변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대응/
	외교통일	○통일비용 공포증의 극복 ○트럼프 행정부 2기 AI 정책과 한미동맹의 AI 협력 전략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202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한국인의 일본 인식(2014~2024) :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정상화의 문턱에 선 일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과 한국 시사점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과 일본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 100일 외교안보정책 평가 및 전망
	국방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전술과 스파이 활동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회색지대전략 ○러시아·북한의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 배경 및 함의 ○'살라미 전술'의 시작? : 서해 구조물에 투영된 중국의 안보전략 ○미국-이란 간 핵협상의 추이와 전망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셋째주	국방	○북한이 가장 겁먹을 한미 전작권 전환 : 결기와 추진전략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결기와 추진전략 ○미중 간 첨단무기 개발 경쟁과 시사 ○인태지역 미중 간 군사력 균형비교 및 시사점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
	환경노동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환경노동, 행정안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고용기회와 노동시장 실태분석 ○경남 외국인노인돌봄종사자의 돌봄노동경험과 안정적 정착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악천후 수당 지급 필요성 검토 위한 기초연구
	교육	○수행형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의 문제풀이 패턴에 따른 학습자 유형 분석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이론·실습 비율
	보건복지	○미취업 고령장애인의 구직활동 및 직업욕구 분석 ○메드텍 오픈이노베이션 동향 분석 ○노인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사회네트워크 모델 연구 ○경남형 Intergenerational Care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AI로 인한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대응방안 ○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현황 ○(유럽) EUIPO 전략계획 2030 ○유럽연합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 동향보고서
	여성가족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어떻게 다를까?
	국토교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정무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행정안전	○주요국 정부 조직·인사관리 제도와 사례
	정보	○北 '보건혁명 원년' 선포와 사이버 공격
	보건복지, 행정안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넷째주	교육	○ 예비교사 교육에서의 교사교육자 역할 탐색 ○ 학교는 안녕한가? : 교육청 지원의 한계와 과제
	외교통일	○ 전후 80년 담화와 일본 정치 : 평가 및 함의 ○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은 무엇일까? ○ 대륙붕 경계획정의 이론과 실제 ○ 트럼프 2기 출범과 캐나다 총선 : 특징 및 함의 ○ 북한 체제의 위기 대응으로서 청년 교양 ○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제언 ○ 2025년 캐나다 조기 총선 결과 및 전망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대외정책 평가 및 함의 ○ 북한의 대러 파병 공식화에 담긴 외교안보적 함의
	기획재정	○ (2025년) 세계경제 전망 : 업데이트 ○ 최근 외환 시장 동향 점검 ○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문화체육관광	○ 대중음악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공연시설 인프라 확충 전략 ○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넥스트 K'를 묻다
	환경노동	○ 국내 기업·대학의 디지털 해외 인재 고용 및 취업 현황 분석 ○ 윤석열 정부 3년 : 생산성 정체, 실질임금 하락 ○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 ○ "알기 쉽게 분석한"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기술적 대응 방안 그리고 시사점 ○ 나의 완벽한 비서, AI 에이전트 ○ 인공지능과 기본 권리에의 영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의 긴장과 조화 ○ 인공지능과 기본 권리에의 영향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이용과 저작권 제한 ○ 인공지능과 기본 권리에의 영향 :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공정성 ○ 인공지능과 기본 권리에의 영향 :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법제의 쟁점 ○ 인공지능과 기본 권리에의 영향 : 인공지능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도전과 법정책적 함의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넷째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무역 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미-아세안 무역·투자 구조와 상호관세 : 협상 전망과 시사점
	국토교통	○중소도시형 컴팩트-네트워크시티 전략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상표 식별력 판단을 위한 AI 모델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건복지, 행정안전	○경기도 이동지원서비스(특별교통수단)의 현황과 개선방안
	행정안전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확산 실태와 대응방안
5월 다섯째주	국토교통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외교통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국제사회의 ESG 공시제도 동향과 시사점
	행정안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과 전남의 정책 방향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한국 정치엘리트와 민주주의 퇴행 ○한국 대통령제의 민주주의 퇴행 요인 ○(서론) 민주주의 퇴행의 세계적 확산과 한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퇴행' ? ○계엄 전후 한국 헌정 민주주의의 위기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현황 및 보전·활용 방안
	외교통일	○트럼프 2.0시대 강대국 정치의 특징과 한국의 과제 ○'북중관계 이상(異常)설'에 대한 통시적 접 ○전략자원의 지정학 : 주기율표 제국의 미래를 위한 미-중 경쟁과 첨단기술·경제안보에의 시사점 ○불법조업 어선의 폭력적 활동에 대한 담론 ○북한의 '간부혁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2025) 통일문제 이해 ○이시바 총리의 베트남, 필리핀 방문 성과와 함의 ○러시아 '전승기념일' 계기 러북관계 주요 동향 평가 ○최근 북한 시장 환율·물가 재급등의 배경과 시사점 ○미-중 경쟁 속 유럽이 바라보는 중국 ○그린란드 문제의 전개 과정과 전략적 의미 ○(2025) 북한 이해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5월 다섯째주	국방	○美北 핵협상시 비핵화-유엔제재 해제 연계방안 ○최근 북한의 군수산업 현대화와 러북 기술협력 동향 및 시사 ○북한의 해군력 현대화 분석 : 의도진단 및 대비방안 ○북한의 해군력 강화 동향 : 평가와 과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제조-서비스 융합 진단 및 수출 확대 방안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환경노동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 혁신 방안 ○유럽연합(EU)의 업종별 사회적 대화
	정무	○금융에 즐거움을 더하는 도파민 뱅킹의 부상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헤어지지 못하는 손님, 떠나갈 수 없는 브랜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인공지능 LLM 시대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美 과학자 엑소더스와 유럽의 영입 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통한 불법정보 우회접속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연구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연구 ○해외 주요 AI 기업의 투명성 확보 전략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특허법적 고찰
	교육	○세종형 인구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	○미디어 다양성 증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OTT 시대의 방송·미디어시장 경쟁상황 분석 방법론 연구 ○해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분석 및 국내 제도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	○제주지역 산모의 산후우울 실태와 지원방안
	법사	○깜냥이 안 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국토교통, 행정안전	○서울시 대심도터널 다용도 활용 개선방안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전직·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수원시, 의견25-0179, 2025. 5. 23.)

□ **질의요지**

전직·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의정회는 수원시의회의 전직·현직 의원이라는 경력으로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제2조),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3조).

이 사안에서 **의정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직·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해당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 해당 단체는 다른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내용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만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회’라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임명된 일반직공무원에게 그 간사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견 25-0072 2025. 5. 9.)

□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임명된 일반직공무원**에게 그 간사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공무원법」 및 **수당규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조제1호 본문**에서는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며, 그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상여수당(제2장), 가계보전수당(제3장), 특수지근무수당(제4장), 특수근무수당(제5장), 초과근무수당(제6장), 실비보상(제6장의2) 등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규정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당규정 등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보수처리지침”이라 한다)에서도 이 사안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나 그러한 수당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및 수당규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제·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안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보수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수당의 신설을 요구**하거나, 같은 지침에서 정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사항 중 **중요직무급의 운영 특례 기준에 맞춰 절감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 ③ (생 략)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5-0335, 2025. 5. 20., 세종특별자치시】

□ 질의요지

「도로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구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7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 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시장등이** 그 개발행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인가·허가· 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이하 "이 사안 설치행위"라 함)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이 사안 **설치 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로법」 제2조제6호**에서는 **"도로구역"을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되면 「도로법」상 도로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법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 개시 공고 여부에 따라 도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 설치행위는 도로구역에서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인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27조**에서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도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구조 및 시설 손상이나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통행 저해 등 **교통안전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가 되지 않은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개시의 공고가 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를 발생시키거나 사적인 개발행위가 도·시군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과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용도지역이나 국토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개발행위를 그 허가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제한하여 도로의 구조·기능을 유지하고 향후 도로 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의 행위를 그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제도는 입법목적 및 허가대상의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토계획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 **설치행위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외에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시장등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의제되는 「도로법」상 인·허가등의 종류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는 의제대상 인·허가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상 행위허가가 의제되어 별도로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먼저 받은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은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순서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나머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허가 의제 제도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에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⑧ (생 략)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 19. (생 략)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 략)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 바. (생 략)

3. (생 략)

③ ~ ⑤ (생 략)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부 25-0262, 2025. 5. 20.】

□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B광역시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는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C의 임기가 개시**되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A가 당선된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A는 <u>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u>

□ 이유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재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종전 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A의 교육감으로서의 임기는 과거 2기의 임기와 연속되지 않아**,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